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031

제출년월일 : 2017.0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과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법규체계 구축.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10조)

나. 「지방공기업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조항 삭제(안 제15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제18조 삭제)

다. 「지방공기업법」 제67조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 (안 제27조)

라. 법제처가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시장이 안산도시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안산도시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 (안 제32조의2 제1항 삭제)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7. 7. 14. ~ 2017. 8. 3.(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4
○ 방침결정문 : 붙임5

기획경제국 예산법무과 정우영 2017-08-11 13:14

< 붙임 1 >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결산 결과 손익이 생긴 때에는 그 손익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예산법무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예산법무과장 전 덕 주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정심사팀장 이 현 옥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무 영 (행정 2793)

기획경제국 예산법무과 정무영 2017-08-11 13:14

〈 붙임 2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① ~ ② (생략)	제15조(이사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삭제〉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삭제〉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삭제〉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삭제〉

기획경제국 예산법무과 정무영 2017-08-11 13:14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7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결산 결과 손익이 생긴 때에는 그 손익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2조의2(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삭제> ② (현행과 같음)

기획경제국 예산법무과 정무영 2017-08-11 13:14